2017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17. 9. 23) - D 책형

01 중앙집권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력한 행정추진으로 국가의 비상사태나 위기 상황에 유리하다.
② 규모의 경제 또는 외부효과 조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에 유리하다.
③ 중앙부처의 감독계통의 다원화로 인해 지방행정의 종합적 처리가 용이해진다.
④ 부처별 전문적 행정분담을 통해 기능별 전문화를 달성하기 쉽다.

해설 ③ [×] 중앙집권은 권한과 능력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중앙부처의 감독계통은 일원화(다원화×)되어 기능중복을 방지하고,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중앙집권의 장점〉

중앙집권의 장점	① 행정의 통일성과 정책의 강력한 추진력의 확보 ② 규모의 경제와 훈련된 관료제를 통한 기계적 능률성의 향상 ③ 기능중복의 방지 ④ 유능한 인재와 최신기계, 기능별 전문화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향상 ⑤ 대규모적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광역적 행정수요에 부응함. ⑥ '위기'와 '긴급사태'를 극복하는 데 용이함.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3~15

▶ ③

02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② 단체자치에서 중시하는 권리는 주민의 권리(주민참여)이다.
③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주체는 국가(중앙정부)이다.
④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구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기관과 국가하급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해설 ② [×] 단체자치에서 중시하는 권리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분권주의).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주민자치이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구 분	주민자치	단체자치
의 미	정치적 의미(풀뿌리 민주주의)	법률적 의미(민주주의와 상관관계 부정)
국 가	영·미형	프랑스·독일 중심 대륙형
자치권	국가 이전의 고유권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전래권)
강조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민주주의)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분권주의)
사무구분	자치사무·위임사무 구분 없음.	자치사무·위임사무 구분
권한부여방식	개별적 수권방식	개괄적(포괄적) 수권방식
중앙정부 통제	주로 입법적·사법적 통제 — 약한 통제	주로 행정적 통제 — 강한 통제
조세 제도	독립세(자치단체가 과세주체)	부가세(국가가 과세주체)
지방정부 형태	기관통합형(의회중심)	기관대립형(기관장 ↔ 의회)
자치단체	순수한 자치단체	이중적 지위(자치단체+일선기관)
통 제	주민통제	중앙통제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8

▶ ②

03 헌법상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 ①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대통령령×)로 정한다.

>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② 지방의회의 조직 · 권한 ·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47, 62

▶ ①

04 신중앙집권화 또는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중앙집권화의 관점은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적 공헌을 비판하는 입장을 대표한다.
② 정보통신기술발전은 지방분산화를 통한 분권화의 요인으로 작동할 뿐 신중앙집권화와는 무관하다.
③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는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신지방분권화의 동인이 되고 있다.
④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해소가 신지방분권의 주요 촉진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설 ① [×] 신중앙집권은 중앙집권과 달리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적 공헌을 인정하는 토대(비판×) 위에 행정국가의 능률성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 간의 권력구조 재편성을 의미한다.
② [×] 정보통신기술발전은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국가의 지방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지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만들어 신중앙집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도 되었다.
④ [×] 경제적 · 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 관여 범위의 확대는 신중앙집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6~19

▶ ③

05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인 주민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된 주민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④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설 ① [○]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 외국인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선거권은 인정될 수 있으나,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폐지 · 분할 · 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③ [○] 우리나라는 주민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도 그 감사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④ [○] 외국인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 · 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 · 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24, 132, 138 / 부속법령 p.11, 13

▶ ②

06 지방의회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② 시·군·자치구의 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 위원회에는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해야 한다.

해설 ① [○]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48조【의장 ·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 · 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동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 지방자치법 제59조 제1항 및 제3항

> **동법 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 **동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 · 사무국장 ·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 1. 별정직 공무원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93 / 부속법령 p.36, 37, 45

▶ ②

07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광역시와 도의 부시장·부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시·도지사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시의회에서 정한다.

해설 ① [×]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2항의 단서

> **동법 제110조【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 ② 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 부지사는 시 · 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동법 제110조【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 부지사는 시 · 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특별시의회×)으로 정한다.

> **동법 제110조【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 ① 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99 / 부속법령 p.50

▶ ②

08 지방자치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소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해설 ① [○]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 ·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 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 · 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 · 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 · 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동법 시행령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⑤ 법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 · 부지사 3명을 두는 시 · 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 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 · 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 · 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 · 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 ·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 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 · 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 · 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② [×]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공소제기된 시점×) 그 권한을 대행한다.

동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③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동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④ [×]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동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00 / 부속법령 p.51

▶ ①

09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

해설 ①, ②, ③ [○], ④ [×]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94 / 부속법령 p.44

▶ ④

1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①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지방자치법상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67 / 부속법령 p.8

▶ ①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방세 원칙은?

> ○ 세원이 각 지역에 가급적 고르게 분포되어 지방정부 간 수입이 균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하다.
> ○ 이 원칙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레저세는 지방세 세목으로 적합성이 떨어진다.

① 안정성의 원칙
② 충분성의 원칙
③ 보편성의 원칙
④ 신장성의 원칙

해설 ③ [○] 보편성의 원칙은 세원이 특정지역에 편재되어서는 안 되며, 각 자치단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편성의 원칙	• 세원이 특정지역에 편재되어서는 안 되며, 각 자치단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수입 균형화를 위해 필요한 원칙
안정성의 원칙	• 지방세수의 연도별 격차가 심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원칙 • 지방재정수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원칙
신축성(신장성)의 원칙	• 지방세수가 행정수요의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큼 탄력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충분성의 원칙	• 지방세수가 자치단체의 기초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원칙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59

▶ ③

12 사바스(E.S. 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 분류에서 민간부문이 공급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시장지향적인 접근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이용권지급
② 계약방식
③ 허가방식
④ 보조금지급방식

해설 ① [○] 민간부문이 공급을 경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은 이용권지급이다.
②, ③, ④ [×] 계약, 허가, 보조금 방식은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05

▶ ①

13 「지방교부세법」상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아닌 것은?

① 부동산교부세
② 소방안전교부세
③ 특별교부세
④ 분권교부세

해설 ①, ②, ③, [○] ④ [×] 지방교부세법 상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이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71

▶ ④

14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로 포함하여 정원 확대 인정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구성을 위한 최초 선거에서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을 반영
④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불이익 배제

해설 ① [○] ②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③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 **동법 제38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 선거에서 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동법 제30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 ·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32, 33

▶ ②

15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해 자기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사무위탁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②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경우 조합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력방식으로 분류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해설 ③ [×] 행정협의회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어 사무처리의 효과가 각 지방자치단체 귀속되며, 실질적 협력의 효과가 크지 않다.

행정협의회	㉠ 개념 :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락 · 조정 · 협의 등을 통한 광역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식 ㉡ 장점 :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에 변화 없이 사무처리의 융통성을 높일 수 있음. ㉢ 단점 : 협의회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어 사무처리의 효과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실질적 협력의 효과가 크지 않음.
일부사무조합	㉠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계약으로 새로운 법인(조합)을 설치하는 방식 ㉡ 장점 : 조합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무처리의 효과가 조합에 귀속하며, 협력의 효과가 협의회의 경우보다 큼. ㉢ 단점 : 행정사무주체의 다원화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분명
사무위탁	㉠ 개념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사무의 일부를 상대방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 ㉡ 장점 : 사무처리비용의 절감, 공동사무처리에 따른 규모의 경제, 서비스 성과 제고 ㉢ 단점 : 객관적 위탁처리비용 산정의 어려움, 사무위탁에 따른 정치적 비난, 위탁문화의 부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못함.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211

▶ ③

1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 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지도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처리 시 의견이 다른 경우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해설 ④ [×]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 · 도는 주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X)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 **지방자치법 제167조【국가사무나 시 · 도사무 처리의 지도 ·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 · 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 · 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 · 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97 / 부속법령 p.76

▶ ④

1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②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고, 이들 도시들은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자치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치구의 사무를 일반 시·군에 비해 확대하고 있다.

④ 포괄적 배분방식이 아닌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해설 ①, ② [○] 지방자치법 제10조

>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시 · 군 및 자치구
> 제1호에서 시 · 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 · 도와 시 · 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 · 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③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에 있어 자치구에 대한 특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④ [○] 동법 제9조

> **동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72 ~ 75 / 부속법령 p.10

▶ ③

18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교육감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해설 ①, ②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 **동법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 **동법 제44조【선거구선거관리】** ①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81 / 부속법령 p.28

▶ ③

19 「지방자치법」상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④ [×] 감사청구는 당해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1년 X)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37 / 부속법령 p.15, 16

▶ ④

20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한 때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은 인정된 적이 없다.

해설 ① [○] 지방자치법 제109조

>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 ③ [○] 동법 제107조

>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④ [×] 불신임의결권과 의회해산권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시 도입되었으나, 1960년 개정 시 폐지되었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93, 98, 99 / 부속법령 p.48, 49

▶ ④